憲法改正特別委員会構成決議案(代案)

議案番號	

提案年月日: 1986年 6月 24日
提 案 者: 國会運営委員長

1. 主 文

國会法 第44條의 規定에 따라 憲法改正特別委員会를 委員数 45人 以内로 構成한다.

2. 提案理由

國民의 代表機関이며 憲法審議機関인 國会가 憲法改正問題와 관련하여 國民 各界各層의 意思를 收斂, 論議함으로써 國民輿望에 따라 國会의 合意로 民主発展을 위한 憲法改正案을 마련하기 위하여 國会内에 特別委員会를 構成코자 하는 것임.

공백

憲法改正特別委員會構成決議案（代案）

提　　案　　說　　明

1986. 6.24

國 會 運 營 委 員 長

공백

國會 運營委員長 李世基議員입니다.

國會運營委員會에서 提案한 憲法改正特別委員會構成決議案에 對한 提案說明을 드리겠읍니다.

먼저 이 決議案의 內容을 말씀드리면 國民의 代表機關이자 憲法審議機關인 우리 國會가 國民各界各層의 民意를 수렴하고 그 바탕위에서 與·野가 合意에 依한 憲法改正案을 마련하기 위하여 國會法 第44條의 規定에 따라 委員數 45人 以內의 憲法改正特別委員會를 構成코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決議案을 提案하게 된 그간의 經過를 말씀드리면, 新韓民主黨과 한국국민당이 昨年 5月31日 各各 憲法改正特別委員會構成決議案을 國會에 提出하여 運營委員會에서 審査 繫留中에 있었으며, 또한 今年4月8日에 民主正義黨에서 憲法特別委員會構成決議案을 提出하여 當委員會에 繫留되어 왔읍니다.

이와같이 院內 3個 交涉團體에서 各各 決議案을 發議하였으나, 與·野間의 異見으로 憲特을 構成하지 못하고 있는 동안, 政治圈 밖에서 百家爭鳴式의 憲法論爭이 過熱됨으로써 社會混亂의 惹起는 勿論 자칫 國論分裂의 조짐마저 보여 왔던 것입니다.

이러한 狀況속에서 지난 4月30日, 靑瓦臺 三黨代表 招請會談과 6月3日과 4日 兩日間에 걸친 野黨代表 單獨面談을 通해 國會에서 與·野가 合意하여 憲法改正案을 早速히 마련하는 것이 政局의 安定은 勿論, 民主主義의 發展에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 意見의 一致를 봄으로써 大妥協의 轉機가 이룩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지난 6月21日 民正黨의 盧泰愚 代表委員과 新民黨의 李敏雨總裁, 그리고 국민당의 李萬燮總裁間의 연쇄 會談에서 憲特構成의 原則에 合意를 하였읍니다.

이러한 合意의 바탕위에서 우리 運營委員會는 今日 第5次 會議에서 3黨幹事로 憲法關係特委構成決議案審査 小委員會를 構成하고 小委員長에 民主正義黨의 安秉珪委員, 小委員으로 新韓民主黨의 愼順範委員, 한국국민당의 姜慶植委員을 選任하였읍니다.

이 小委員會에서는 各交涉團體의 意見을 바탕으로 代案을 마련하였으며 이에 따라 今日 第5次 運營委員會에서 이미 各交涉團體가 發議한 3件의 憲法關係特委構成決議案을 本會議에 附議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小委員會가 마련한 同憲法改正特別委員會構成決議案을 代案으로 採擇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參考로 이 憲法改正特委構成決議案을 國會運營委員會에서 處理함에 앞서 交涉團體代表間에 協議한 結果 特委活動時限은 今年 9月末까지로 하되 진전에 따라서는 定期國會末까지 延期할 수 있도록 意見을 모았읍니다.

尊敬하는 議長, 그리고 선배동료議員여러분!

지난 1年餘동안 숱한 우여곡절과 陣痛끝에 國會運營委員會에서 與·野가 함께 만들어낸 이 憲法改正特別委員會 構成案을 提案함에 있어서 본인은 여러 議員동지들과 똑같이 깊은 감회를 갖게 됩니다.

또한 지금 밖에서 이 議事堂을 지켜보고 있는 모든 國民들의 가슴속에서도 우리와 똑같은 감회가 있을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憲法改正特別委員會 構成案은 지금까지의 不信과 葛藤, 그리고 對決의 政治를 극복하고, 信賴와 調和, 그리고 妥協의 새로운 政治時代를 개막코자 하는 우리모두의 소망과 국민적 여망의 표현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룩한 이 「妥協의 씨앗」이 「合意改憲」이라는 대결실을 맺게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무한한 忍耐와 勇氣, 그리고 智慧가 요청되며, 또한 확고한 信賴와 끈질긴 妥協의 정신이 그 무엇보다도 필요하다는것을 깊이 인식해야 할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민주대장정의 역사적인 첫발을 내딛는 순간에 있읍니다.

우리를 지켜보는 대다수 國民들은 일면 安堵와 부푼 期待속에서도, 한편으로는 일말의 우려와 不安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는것도 사실이며, 우리들 또한 앞으로 우리가 가야할 길이 얼마나 멀고, 또 해야 할일이 얼마나 벅찬것인가를 잘알고 있읍니다.

우리의 속담에 「始作의 半」이라는 말도 있읍니다만, 오늘 우리가 이 憲法改正特別委員會를 구성코자 하는 精神속에는 어떠한 난관이라도 극복하고 「大妥協의 結實」을 기필코 만들어내겠다는 의지와 묵시적인 합의도 함께 내포되어 있기때문에 반드시 훌륭한 성과를 이룩할 것으로 本人은 확신을 합니다.

議員 여러분!

이제 이땅에 진정한 民主主義의 政治文化를 꽃 피우느냐, 아니면 다시 실의와 혼돈의 역사를 되풀이 하느냐 하는 문제는 오로지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의 意志와 努力如何에 달려있읍니다.

올가을 정기국회의 이 자리에서는 모든 국민의 여망을 담은 새로운 憲法을 탄생시킴으로써 이 12代 국회가 우리 헌정사에 길이 영광된 장으로 기록될 수 있도록 이 자리에서 다함께 기약을 하고 또 다짐할 것을 제의합니다.

끝으로 이 憲法改正特別委員會 구성이 결실을 맺도록 성원해 주신 국민들과 동료議員 여러분의 노고와 협조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이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백